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우리카드

2. 조치일 : 2020. 1. 9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사항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(STR) 업무 운영 불합리

[1] 일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한된 거래이거나 전산시스템 설계 및 운영상 오류로 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

○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도 점검하지 않는 등 의심거래 보고업무가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

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및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·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[2] 고객의 거래를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대체거래라는 이유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, 동 거래유형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 검토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 절차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

○ 대체거래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 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충실히 문서화하도록 개선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3 고객이 해외 가상통화취급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,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

○ 국내 고객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구매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,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(2) 고객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

1 할부·리스거래의 경우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실제 소유자 정보를 미입력*한 사례가 있으므로

* 2016.6월~2018.12월 기간중 총 ◎◎◎건

○ 할부·리스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자 신원을 필수입력 정보로 지정하는 등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절차를 개선하고 입력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2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설립목적을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 입력시 법인형태를 영리법인으로 입력하고 설립목적을 공란으로 남겨 두거나 '비영리법인' 등으로 소홀히 입력한 경우가 있으므로

○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종코드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법인형태가 자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표시되고 설립목적을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

3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간 고객확인 업무 위·수탁에 관한 사항이 업무제휴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객확인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

○ 우리종합금융을 통한 고객확인 업무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업무제휴계약서 등에 고객확인 업무 위·수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

(3)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규정 미비

□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부통제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람

① 내규「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」및「국외영업점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」에 따르면 준법지원부는 해외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

② 은행 영업점, 카드영업소·지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 모집 채널별 고객확인 이행여부를 적절하게 관리·감독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